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 매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 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					
기 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